

『구미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안 자 : 구미시장

2. 제안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시행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통합지휘소 설치 목적, 정의, 재난현장 대응단계(안 제1조~제3조)
- 통합지휘소 설치 및 현장지휘관 지정(안 제4조~제7조)
- 재난현장 상황전파·출동·조치(안 제8조~제18조)
- 재난현장 긴급복구 및 복구체계 전환(안 제19조~제24조)

4. 참고사항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제5항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되어 2014년 2월 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재난 발생시 재난현장의 총괄·지휘를 위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의 설치·운영을 규정하여,

-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초기 대응능력을 강화하여 발생 하는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 내용으로는

- 통합지휘소 설치 목적, 정의, 재난현장 대응단계(안 제1조~제3조)
- 통합지휘소 설치 및 현장지휘관 지정(안 제4조~제7조)
- 재난현장 상황전파·출동·조치(안 제8조~제18조)
- 재난현장 긴급복구 및 복구체계 전환(안 제19조~제24조)

○ 검토결과

- 본 조례안은

우리시 관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통합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시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재난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상황전파에서부터 긴급복구까지의 일련의 재난현장 활동 수행을 위한 것으로써 안전행정부의 표준 조례안에 근거하여 제정한 사항으로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